

의안번호	제 19 호
의결연월일	1998. 8. 27.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 8. 21 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8. 8. 24

다. 상 정 일 자 : 1998. 8. 26

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재무과장 : 황선봉)

가. 제 안 이 유

-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98. 8. 9~8. 14)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 감면을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감면대상 -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의 납세의무자

- 감면세목 -- '98년분 종합토지세(매물 또는 유실된 면적에 대하여 면제)
- 감면세액 - 필지별 피해면적에 대하여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감면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이문기)

-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것으로
-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유세 성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임.
- 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의 일부가 형질이 변경되었다 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보유세 성격이 강한 종합토지세의 징세 목적에는 모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또한 종합토지세는 전·답등 농경지뿐 아니라 대·임야등 기타 토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대지등 기타 토지에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의결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결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